

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

2018.5.3 국회도서관지침 제169호 제정
개정 2019.3.7 국회도서관지침 제180호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8조 및 「국회기록물관리규칙」 제33조에 따라 국회도서관에 설치하는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(이하 “공개심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5년 주기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 및 기록물 비공개 기간 연장요청에 관한 사항
2. 비밀기록물 재분류 또는 해제 시 심의가 필요한 사항
3. 그 밖에 기록물 공개와 관련하여 국회도서관장이 요청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국회도서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1. 기록물 공개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있는 과장급 이상 국회 공무원 2인

2. 법학, 행정학, 정치학, 역사학, 기록관리학, 문헌정보학 등 관련 전공자로 기록물 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4인

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회도서관장이 위촉한다.

④ 공개심의회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기록정책과장으로 한다.<개정 2019.3.7>

제4조(직무) ① 위원장은 공개심의회를 대표하며, 공개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회기록물 공개 심의대상 목록, 별지 제2호서식의 국회기록물 공개 심의 의결서, 별지 제3호서식의 국회기록물 공개 서면심의 의결서,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또는 관리하는 등 공개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.

제5조(의견 청취) 공개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기록물 생산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 및 의결 등) ① 공개심의회는 국회도서관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.

② 공개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결정한다. 다만,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회기록물 공개 서면심의 의결서를 통해 의

견을 공개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위원은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(공개심의회 결과의 공표) 공개심의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기로 결정한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목록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

제8조(비밀준수 의무) 위원장 및 위원은 기록물 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수당과 여비 등)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 <제169호,2018.5.3>

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0호,2019.3.7>

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국회기록물 공개 심의 의결서

일시		장소	
안건			
의결사항			
구 분	성명	직위	서 명
위원장			
위 원			
위 원			
위 원			
위 원			
위 원			
위 원			
위 원			
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			

[별지 제3호서식]

국회기록물 공개 서면심의 의결서

의결일 :

위원명 : (인)

안건 :

심사내용 :

검토 의견	의결내용	
	가	부

